

제3장

문장편

제1절 | 문장 정비의 원칙

제2절 | 문장 정비의 실제

알기 쉽고 반듯한 법령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절 > 문장 준비의 원칙

바른 문장 쓰기

- 어법에 따라 주어, 목적어 등 필요한 문장성분을 갖추어 쓴다.
- 문장의 주어가 잘 드러나도록 쓴다. 특히 복문³⁴⁾에서는 각각의 주어에 맞는 각각의 서술어를 써서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구절은 서로 가까이 두고 문장성분 간에 호응이 되도록 한다.

간결한 문장 쓰기

- 법령문의 기본 단위인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문장에 내용이 너무 많으면 문장이 복잡해지므로 조나 항은 되도록 한 문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면 단서나 후단을 활용한다.
- 많은 내용이 열거되는 복잡한 문장은 열거되는 사항을 호와 목으로 구분하여 쓰고, 수식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한다.
- 중복되는 표현, 당연한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명확한 문장 쓰기

- ‘또는’, ‘및’에 의한 연결 관계를 분명하게 쓴다. 특히 수식 관계가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이중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꾸어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 다의적, 중의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지시어는 되도록 쓰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성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 되도록 능동문으로 쓴다. 능동문에 비해 피동문은 구조가 복잡하고 행위주체(주어)를 파악하기도 어려우므로 능동문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단문과 복문 등 문장의 짜임에 관한 것은 제203~204쪽 참조.

- 일본어 투 표현은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다. 명사가 연속되는 명사구 중심의 문장, 부자연스럽게 쓰인 격조사, 일본어에서 온 관용적 표현, 일본어 직역 투의 피동문은 우리말 어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꾼다.

한눈에 보이는 문장 쓰기

- 표, 계산식,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때에는 표, 계산식, 그림 등으로 표현한다.

제2절 ▶ 문장 정비의 실제

1 바른 문장 쓰기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널리 따르는 어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법 문장을 쓸 때에는 선례나 관행화된 표현 방식에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어법을 준수하는 것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어법은 법 문장이라고 하여 예외로 할 수 없는, 문장을 쓸 때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따라서 법 문장을 쓸 때에도 어법에 따라야 한다.
- 먼저 문장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필수적인 문장성분을 갖추어 써야 한다. 다만, 반복되는 주어 등 없어도 문맥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 우리말은 조사가 명사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조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

가. 주어를 분명히 밝힌다

1) 법령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어를 쓴다

정비기준

- 우리말에서는 종종 주어를 생략하고 문맥과 정황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 문장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행정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법 문장의 주어는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 법 문장의 주어가 의무 이행자인 경우에도 의무 이행자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가) 주어를 바르게 쓴 예시

(1) 행정권한의 주어를 분명하게 하는 경우

- 행정권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어를 밝혀 썼다.

예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항)

(2) 복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

- 복문에서 두 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주어를 드러내야 한다.
- 다음 예시의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주체는 외교부장관이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므로 각각 주어를 밝혀 썼다.

예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다음 예시의 경우 ‘하수급인이 ~ 준수하도록’은 부사절로서 서술어인 ‘관리하여야 한다’를 꾸며 주고 있다. 주절의 주어(수급인)와 부사절의 주어(하수급인)가 다르므로 각각 밝혀 썼다.

예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

나) 주어를 찾아 쓴 정비사례

💡 복문의 다른 주어를 찾아 쓴 경우

- 다음 예시는 ‘그 시설·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가 안겨 있는 문장이다. ‘협력하여야 하는’ 주체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는 ‘정부와 공공단체’이지만, ‘이용하는’ 주체는 ‘정부와 공공단체’가 아니므로 해당하는 주체를 찾아 밝혀 써야 한다.

예

제8조 (정부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시설·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8조)

💡 생략된 주어를 찾아 쓴 경우

- 다음 예시에서 본문의 주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이나, 단서의 주어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단서의 주어가 생략되어 마치 본문의 주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서술어(연장하다)의 주체를 찾아 밝혀 써야 한다.

예

제43조(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3조(완성검사)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내용 반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1
소개2
용어3
문장4
작성례5
어문규정

- 다음 예시는 주어가 생략되어 어색하므로 서술어(~하여야 한다)의 행위 주체인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를 찾아 써야 한다.

예

제10조(징계처분등) ① (생략)

②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2항)

- 다음 예시는 누구나 주어를 알 수 있어 생략하는 경우와 다르게 해당 법 조문을 찾아야만 주어를 알 수 있는 문장이다. 주어인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을 넣어 주면 법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주어를 알 수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쉽고 문장 구조도 완성된다.

예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다) 예외적으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시

(1) 한 문장 안의 주어가 같은 경우

- 법 문장에서는 주어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장 내에 동일한 주어가 반복되거나 단서 또는 후단의 주어가 본문 또는 전단의 주어와 같아서 주어를 쓰지 않아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 주절(외국인은 ~ 취득할 수 있다)과 부사절(외국인은 ~ 허가를 받아)의 주어가 같으므로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 제9조제1항)

(2) 본문·단서 또는 전단·후단의 주어가 같은 경우

- 다음 예시에서는 전단과 후단의 주어가 '행정청은'으로 같고 후단의 주어를 쓰지 않더라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후단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7조제1항)

(3) 주어가 일반 국민인 경우

- 주어가 일반 국민이나 국가·정부 등인 경우, 법령 소관 부처의 장이나 집행기관의 장 등으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 가까운 조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처분 또는 재판의 당사자인 경우 등으로서 주어를 예측 가능하고 법리적으로나 해석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 법령 적용 대상이 '국민 누구나'임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누구든지]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4) 주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등인 경우

- 국가배상 등과 같이 법령의 전체 맥락이나 정책 성격상 국가 등이 행위 주체임이 자명한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3조(배상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5) 주어가 처분 또는 재판의 당사자인 경우

- 소송법에서 항소 등을 하는 주체는 당사자(대리인 포함)이므로 모든 절차마다 그 주체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예

제19조(항소) ① **[당사자]**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6) 문장에 행위 주체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 문장 자체가 행위 주체를 예정하고 있어 주어를 쓰면 동어 반복이 되는 경우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의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이라는 조건에 ‘세법을 해석·적용하려는 자는’이라는 행위 주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법 제61조의 경우에도 주어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이므로 굳이 주어를 쓸 필요가 없다.

예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하려는 자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제61조제2항)

2) 주어가 잘 드러나도록 쓴다

정비기준

-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경우에 대체로 잘 드러난다.
- 그러나 해당 법령 조문의 전개상 목적어 등 다른 문장성분이 화제(또는 주제)가 되어 ‘~는’ 등의 형태로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으므로 앞뒤 조문의 흐름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가) 주어를 문장의 맨 앞에 둔 예시

- 다음 예시는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일반적인 문장 형태이다.

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1항·제2항)

- 주어가 절의 수식을 받는 경우 그 전체가 주어가 되어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다. 즉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와 같이 ‘누구든지’를 쓰지 않고 수식어가 ‘자’라는 주어를 꾸미는 방식(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예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나) 주어를 문장의 맨 앞으로 옮긴 정비사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도록 위치를 변경한 경우

- 문장 맨 앞에 목적을 설명하는 부사구가 옴에 따라 문장 전체의 주어(보건복지부장관은)가 문장 한가운데에 있어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색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문장의 맨 앞에 두면 문장이 한결 자연스럽게 명확해진다.

예

제3조(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주절의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도록 위치를 변경한 경우

- 다음 예시는 조건절(각급 학교의 장이 ~ 해당할 때에는)과 주절(관할청은 ~ 요구할 수 있다)로 구성된 복문이다. 주절의 내용이 문장 전체의 주된 내용이므로 조건절이 지나치게 길지 않으면 되도록 주절의 주어를 문장의 맨 앞에 둔다.

예

제54조의2(解任要求) ① 各級學校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管轄廳은 任免權者에게 當해 學校의 長의 解任을 要求할 數 있다.

→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

3) 주격 조사와 보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정비기준

- 주어는 행위의 주체로서 주격 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³⁵⁾
- 주격 조사 ‘이/가’는 주어에 붙어 주어임을 분명히 나타내지만, 주어에는 보조사 ‘은/는’도 많이 사용된다.³⁶⁾ 법 문장, 특히 복문에서 ‘이/가’는 종속절의 주어에 쓰이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주절의 주어에는 보조사 ‘은/는’을 주로 사용한다.

가) 주격 조사와 보조사를 쓴 예시

- 다음 예시는 주절과 조건절로 구성된 복문으로, 주절의 주어와 조건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이다. 주절의 주어에는 보조사 ‘은’을 쓰고, 조건절의 주어에는 주격 조사 ‘가’를 썼다.

35) ‘은/는’은 보조사로서 ‘주제’, ‘대조’, ‘강조’ 등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다. 보조사는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 등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가 붙은 용어가 주어로 사용되었는지, 목적어로 사용되었는지 유의해야 한다.

- ‘방재작업은 끝났다’와 ‘방재작업은 끝났다’에서 앞의 ‘방재작업은’은 주어이고 뒤의 말은 목적어이다.

36) 그 외에도 ‘이/가’와 ‘은/는’에 대해서는 각각 ‘신정보’와 ‘구정보’를 나타낸다는 등 많은 이론과 주장이 있으나, 여기서는 위의 설명과 같이 학교문법에서 다루는 정도로만 설명하기로 한다.

- 어떤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신정보). 그런데 그 나무꾼은 매우 부지런했어요(구정보).

예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생략)

②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2항)

나) 보조사를 활용한 정비사례

(1) 주절의 주어와 조건절의 주어가 반복되는 경우

- 복문 형식의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거나 의미상 동일할 때에는 그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보통 주절의 주어는 ‘~은/는’으로, 종속절의 주어는 ‘~이/가’의 형태로 쓰인다.
- 복문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로 ‘은/는’을 많이 쓴다. 따라서 주절의 주어(~은/는)를 문장의 맨 앞에 두고, 주절과 같은 조건절의 주어(~이/가)는 생략하도록 한다.

예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

(2) 같은 표현이 중복되는 경우: ~은/는 ~할 때에는

- 주절의 주어에 보조사 ‘은/는’을 쓰면서 종속절의 상황에도 초점을 두게 되면, ‘~는 ~할 때에는’과 같이 동일한 표현 ‘는’이 반복될 수 있다.
- 이를 피하기 위해서 종속절의 주어에 조사 ‘이/가’를 쓰고 주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26조(질문검사권) ①·②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6조제3항)



나. 목적어를 분명히 밝힌다

1) 생략된 목적어를 찾아 쓴다

정비기준

- 목적어는 동작이나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성분으로 ‘무엇을’의 형태를 띤다.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주어와 함께 꼭 밝혀 주어야 할 문장성분이므로 찾아서 쓴다.

생략된 목적어를 밝혀 쓴 경우

- 다음 예시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대상’이 필요한 문장이므로 그 대상(목적어)을 밝혀 주었다.

예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대상을 명시한 경우

-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을 쓸 때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대상을 밝힌다.

예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생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2) 목적어의 형태를 갖춘다

정비기준

- 목적어에는 목적격 조사 외에 ‘은/는’을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어임을 명확히 하려면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에 위반하다 → ~을 위반하다

- 종종 법 문장에 보이는 ‘~에 위반하다’ 등의 표현은 일본어 문장을 직역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여 목적어와 서술어를 어울리도록 쓴다.

예

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하천법 시행령」 별표 5)

💡 ~에 같음하다 → ~를 같음하다

- ‘같음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을/를’의 형태로 고쳐 쓴다.

예

제58조의2(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2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에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3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을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제4항)

3) 목적어를 서술어 앞에 둔다

정비기준

-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목적어가 있어야 문장이 완전해진다.
- 타동사의 목적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장의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순을 바꾸어 목적어를 타동사 바로 앞에 둔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문장 구조를 개선하여 목적어를 서술어 앞에 둔 경우

- 다음 예시는 주어부(법 ~ 권한은)가 너무 길어 어색하다. 중심 내용을 추려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으로 어순을 재배치한다.

예

제20조(권한의 위탁)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목적어가 중복 규정된 경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의 규정은 '은 ~은'의 형태로 맨 앞에 있지만 내용상 목적어이다. 이러한 경우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혼동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라는 목적어와 중복되므로 목적어의 형태를 갖추어 '이'의 자리에 직접 규정한다.

예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제2항)

4) 목적어를 서술어와 잘 어울리도록 쓴다

정비기준

- 서술어가 '자동사'인데 목적어를 둔 경우에는 동사의 형태를 타동사로 바꾸거나 목적어를 다른 문장성분으로 고친다.
- 서술어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동사의 형태를 자동사로 바꾸거나 목적어를 찾아 쓴다.

💡 성질을 변하지 → 성질을 변하게 하지, 성질이 변하지

- ‘변하다’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하다’를 사동 형태인 ‘변하게 하다’로 고치거나, ‘성질을’을 서술어 ‘변하다’에 맞춰 ‘성질이 변하다’로 고친다.

예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이나 권리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민법」 제118조) ※2019년 국회제출안

💡 상대방이 확정된 → 상대방이 확정된

- ‘확정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 없이 쓸 수 없다.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확정되다’로 고친다.

예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해야 한다.

(「민법」 제142조) ※2019년 국회제출안

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정비기준

- 문장의 기본 단위는 주어-서술어이며, 그 둘이 짝을 이루어 주술관계를 이룬다.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가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주술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여러 개 쓰려면 각 행위들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주술관계가 두 번 이상 나오는 복문의 경우에도 하나의 행위 주체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서술어만 쓴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1) 주어와 서술어를 바르게 쓴 예시

가) 주어-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경우

예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1항)

나)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2개 이상 쓰는 경우

-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여러 개 쓰려면, 각 행위들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예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 ③ (생략)
 ④ 구조·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2) 서술어를 찾아 쓴 정비사례

 대등접속문의 서술어를 찾아 쓴 경우

- 법 문장에서 둘 이상의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면서 서술어가 같으면 앞절의 서술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문장이 길 때에는 서술어를 생략하지 않고 모두 쓴다.

예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① ~ ③ (생략)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개정 내용 반영
 (「군인사법」 제59조의2제4항)

2 간결한 문장 쓰기

- 구조가 복잡한 긴 문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 문장에 여러 주제를 담으려고 하면 주어-서술어가 꼬이거나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게 된다. 법 문장은 하나의 주제를 통일성 있게 규정해야 한다.
- 법령은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달리 조(條), 항(項) 등을 기본 단위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하면 법 문장을 훨씬 간결하고 명확하게 쓸 수 있다.
- 조나 항은 원칙적으로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하도록 한다. 규정할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에는 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 단서나 후단은 조나 항이 주된 내용과 예외적·부수적 사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주된 내용과 함께 규정해야 할 만큼 긴밀한 관계일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 한 조에 규정하는 항의 개수는 되도록 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 긴 문장은 짧게 나누어 쓴다


1)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정비기준

- 조나 항에 규정할 내용이 많아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그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한다.
- 일반적으로 행위 주체별, 세부 주제별로 나누거나 일련의 절차에 따라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

가) 행위 주체별로 항을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문장 안에 둘 이상의 행위 주체가 등장하고 각 행위 주체별로 의무나 권한이 달리 규정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나눈다.

 '배출권거래증개회사'와 '주무관청'을 기준으로 항을 나눈 경우

예

제29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② (생략)


③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배출권거래증개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증개회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항)

 '임명권자'와 '비서실장'을 기준으로 항을 나눈 경우

- 행위 주체가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명하고'의 주체는 임명권자이고 '관장한다'의 주체는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한 문장에 행위 주체가 다른 서술어가 섞여 있는 경우 각각의 행위 주체별로 항을 나눈다.

예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0조제2항) ※권고안

나) 세부 주제별로 항을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규정할 내용이 각각 다른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 그 세부 내용별로 나누어 규정한다.

 '대행기관의 의무사항'과 '심의기관의 요구사항'으로 항을 나눈 경우

- 다음 예시는 '대행기관의 의무사항'과 '심의기관의 요구사항'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별개의 항으로 나눈다.

예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 ⑤ (생략)

⑥ 대행기관은 해당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 및 계획 등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 및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담당 직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대행기관은 해당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 및 계획 등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⑦ 한국은행총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 및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담당 직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7항)

💡 '등록'과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항을 나눈 경우

- 다음 예시는 '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별개의 항으로 구분한다.

예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16조의3 및 제27조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계획의 공고'와 '서류 열람'에 관한 사항으로 항을 나눈 경우

- 하나의 항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공고'와 '관계 서류 열람'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용에 따라 별개의 항으로 나눈다.

예

제4조의4(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 수립기준 등)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이 때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2항·제3항)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항으로 규정한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상위법 위임에 따라 학습보조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의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규정한다.

예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학습 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③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항)

다) 절차에 따라 항을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정할 때에는 업무 순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을 나누어 규정한다.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반영' 절차로 항을 나눈 경우

- 하나의 항에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반영 절차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문장이 길고 복잡하므로 각각의 절차로 항을 나눈다.

예

제6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출연금 확정 통지'와 '교부 절차'로 항을 나눈 경우

- 하나의 항에서 출연금 확정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교부받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항으로 나눈다.

예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원은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제5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라) 단서나 후단을 다른 향으로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단서나 후단을 규정하려면 주된 내용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긴 문장을 본문/단서나 전단/후단으로 규정하면 문장을 한 번 끊어 읽게 될 뿐만 아니라, 내용 간 관계가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서나 후단으로 규정할 내용이 많거나 본문 또는 전단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아 별도의 세부 주제나 절차로 구분될 때에는 다른 향으로 규정한다.
- 단서는 주된 내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후단에 비하여 다른 향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적다. 소송 실무에서는 본문인지 단서인지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서를 다른 향으로 구분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조문을 세 문장 이상으로 쓰거나 단서와 후단을 같이 규정하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그 내용을 적절히 나누어 다른 향으로 규정한다.

단서를 다른 향으로 규정한 경우

예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5항·제6항)

💡 후단을 다른 향으로 규정한 경우

예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생략)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 교육훈련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항)

💡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된 문장의 후단을 다른 향으로 규정한 경우

- 조나 항을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하여 단서와 후단을 동시에 규정하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이러한 경우 일부 내용을 다른 조문이나 향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단서’와 ‘후단’이 앞 문장의 어디에 연결되는지 주의해야 한다.

예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8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등”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2) 단서를 두는 경우

정비기준

-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만 의무 또는 절차를 달리 정할 때에는 접속사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를 쓸 수 있다.
- 단서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이 되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주된 내용과 예외적인 사항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나 항의 구조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단서는 본문으로 규정될 주된 내용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가) 단서의 예시

(1) 본문의 행위주체 중 일부를 제외한 경우

예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2) 일정한 상황 또는 일정한 대상에 대한 의무나 요건을 완화한 경우

예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3) 적용대상을 일부 배제한 경우

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 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 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환경보전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 조나 항의 일부를 단서로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예외를 단서로 규정한 경우

- 주된 내용을 본문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사항은 단서로 처리한다.

예

제78조(기간의 계산) ① 일·월 또는 연으로써 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업무 정지기간의 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8조(기간의 계산) ① 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괄호 안에 규정된 특별한 상황을 단서로 규정한 경우

-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을 괄호 안에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단서로 구분한다.

예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①·② (생략)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3) 후단을 두는 경우

정비기준

- 조나 항의 문장이 주된 내용에 더하여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사항,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길고 복잡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관계를 살려 후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후단은 보통 '이 경우'로 시작한다.
- 주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단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거나 후단으로 규정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항으로 구분한다.

가) 후단의 예시

(1)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예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 ③ (생략)

-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

(2) 유의사항이나 요건 등을 보완하여 설명한 경우

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3) 전단에 대응하는 의무를 규정한 경우

예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생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나) 조나 항의 일부를 후단으로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 부수적·추가적인 사항을 후단으로 규정한 경우

-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리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선 규정하고, 도장을 지니지 않았을 때에 관한 사항을 후단으로 규정한다.

예

제287조(조서의 서명) ① 관세법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고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인을 찍어야 한다.**

→

제287조(조서의 서명) ① 관세법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관세법」 제287조제1항)

- 통보하는 경우의 서식을 먼저 규정하고, 통보에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를 후단으로 규정한다.

예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해당 풍속영업소가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을 허가한 자가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4) 열거된 사항을 호나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 정비사례

정비기준

- 한 문장에 일정한 기준에 속하는 여러 사항들을 한꺼번에 나열하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항을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일부가 수식을 받고 있는 경우 수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경우 호나 목으로 나누어 규정하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 오고 연결 관계도 명확해진다.
- 이 경우 각 호 간 또는 각 목 간의 관계는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

 **항의 본문 내용 일부를 각 호로 나눈 경우**

예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사목(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아목(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자목(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법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게재,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항의 단서 내용 일부를 각 호로 나눈 경우**

예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및 제26조의5에 따른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 제26조의5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약칭함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 호의 내용을 각 목으로 나눈 경우

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이사
- 나. 대표이사
- 다. 업무를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 라. 감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하나의 호를 두 개의 호로 나누어 결격사유를 명확히 한 경우

예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권고안)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세무사법」 제4조)

※ 제4호를 개정(법률 제17339호)하면서 제4호와 제5호, 두 개의 호로 나누었지만 제5호도 문장구조가 복잡하므로 권고안과 같이 각각 나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한다

정비기준

- 문장은 되도록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면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므로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한다.

1) 중복되는 표현

독립공무원위원회의 구성은 ~로 구성한다 → 독립공무원위원회는 ~로 구성한다

- 독립공무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문장의 앞뒤로 중복되고 있다.

예

제7조(도립공무원위원회·광역시립공무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립공무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도립공무원위원회·광역시립공무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무원위원회 및광역시립공무원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내용 반영

(「자연공무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중복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삭제


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중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2호)

 중복되는 ‘위임·위탁’ 삭제

예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가 제87조에 따라 위임·위탁된 경우 그 위임·위탁받은 자

→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

 잉여 표현의 삭제

- ‘하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 경우 ‘실시’를 삭제한다.

예


제13조(검사 등) ①·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혈액관리법」 제13조제3항)

 과반수(過半數) 이상 → 과반수

- ‘이상’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이란 뜻인데 ‘과반수’에는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다. ‘과반수’로 간결하게 표현한다.

예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 (생략)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사람

→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5호)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2) 당연한 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에 대한 부연 설명을 삭제한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시킬 때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삭제한다.

예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 ③ (생략)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예

제44조(투표시간) ① (생략)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달아야 한다.

→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달아야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권고안

3) 불필요한 내용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각 호의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각 호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다음 예시에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쓰지 않더라도 뒤의 ‘~중에서’가 그 의미를 대신해 주므로 삭제할 수 있다.

예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감사원법」 제7조) ※권고안

💡 ~에 대하여 이를 → ~를

- ‘~에 대하여 이를’은 일본어 직역 투로 어색한 표현이므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간결하게 쓴다.

예

제5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③ (생략)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중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하다’는 어떤 범위에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수치가 분명할 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총액의 100분의 10 자체가 ‘금액’이므로, ‘해당하는 금액’은 불필요하다.

예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미만의 단수 → 미만의 기간은/미만은

- 불필요한 단수(端數)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면 중요한 내용만 남게 되어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다.

예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② (생략)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3항)

예

제130조의7(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176조의3에 따른 재산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3 명확한 문장 쓰기

- 법 문장은 그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
- 특히 연결 관계나 수식 관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끊어 읽을 수 있도록 문장 구조를 개선하고, 모호한 지시어는 지시하는 대상을 밝혀 쓰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선을 주는 이중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어 주면 법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가. ‘또는’, ‘및’의 접속 관계를 분명하게 쓴다

정비기준

- ‘또는’, ‘및’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법 문장에는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법 문장을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 나열된 둘 이상의 명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말을 동시에 받거나, 뒤에 나오는 말을 동시에 수식할 때에는 ‘또는’이나 ‘및’으로 연결할 수 있다.
- ‘또는’, ‘및’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풀어 쓰거나 문장 구조를 바꾼다.

1) ‘또는’을 사용하는 경우

- ‘또는’은 ‘그렇지 않으면’의 뜻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에 쓴다.

예

물건 제조 또는 수입 허용 → 물건 제조 또는 수입 허용(○)
 물건 제조나 물건 수입의 허용(○)
 물건 제조 허용이나 물건 수입 허용(○)

- 두 개의 사항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또는’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이나/~거나’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나/~이나/~거나’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이 법에 따라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이 법에 따라 선임되었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다음 예시의 경우 개정 전에는 ‘및’으로 연결되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둘 다에 공고해야 하지만, ‘또는’으로 개정됨으로써 둘 중 하나의 의미로 바뀌었다.

예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생략)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2) ‘및’을 사용하는 경우

-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나열할 때 쓴다.

예
 지방 채무 및 채권 관리 → 지방 채무 및 채권 관리(○)
 지방 채무와 지방 채권의 관리(○)
 지방 채무 관리와 지방 채권 관리(○)

- 두 개의 사항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및’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와/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와/과’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다음 예시의 경우 개정 전에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중 하나만 실시해도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및’으로 개정됨으로써 평가 시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모두 하도록 바뀌었다.

예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3) ‘또는’이나 ‘및’을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수식 범위를 명확히 한다

- ‘또는’으로 이어진 명사구(A 또는 B) 앞에 긴 수식어가 붙으면, 그 수식어가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쪽 명사(A)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이러한 경우에는 긴 수식어를 ‘또는’으로 이어진 명사구(A 또는 B) 뒤에 풀어 쓰는 등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어 그 의미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규정한다.

예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

→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 또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일 것**³⁷⁾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권고안

‘또는’이 ‘해당하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쓴다

- 다음 예시와 관련하여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A)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B)이 모두 변경되더라도 A나 B 중 하나만 표시해 주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³⁸⁾

37) 같은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권고안과 같은 방식으로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정하고 있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일 것

38)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26 해석례: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법령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또는’이라고 표시하면서도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더 구체적으로 써 준다.


예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생략)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2. **내화·방화·피난 및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권고안

 ‘~나(~거나)’와 ‘또는’을 함께 쓰지 않는다

- ‘~나(~거나)’와 ‘또는’의 연결은 적절하지 않다. 둘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불필요한 요소인 부사 ‘또는’을 삭제한다.

예

제1조(목적) 본법은 국가보안법의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타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조)

예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 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 ※권고안



나. 의미가 불명확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정비기준

- 법 문장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수식어를 쓰게 되면 그 수식을 받는 대상이나 범위에 혼동이 생기거나, 수식어의 의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 특히 과태료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할 때에는 이해하는 데 혼선을 일으키는 수식어를 삭제한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식어를 삭제한 경우

- 다음 예시는 「자연공원법」 제29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씌으로써 수식 대상이 ‘계곡’인지 ‘목욕·세탁 행위’인지 혼란스럽고, 수식 대상이 ‘목욕·세탁 행위’라면 ‘자연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목욕·세탁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아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명확히 규정하고 그 의미를 흐리는 수식어는 삭제한다.

예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6호) ※권고안

다. 중의적, 다의적 표현은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 쓴다

정비기준

-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읽히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은 정확한 의미로 바꾼다.

💡 기피신청을 받은 자 →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

- 다음 예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의미로 쓴 것이나, ‘기피 신청을 접수한 사람’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므로 기피신청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예

제38조(제척 및 기피) ①·② (생략)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징계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심사전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심사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라. 이중 부정문은 되도록 긍정문으로 쓴다

정비기준

- 이중 부정문은 부정 표현이 중복되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선을 줄 수 있고 문장도 길어진다.
- 내용을 의도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이중 부정을 써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쉬운 긍정문으로 쓴다.

 ~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된 후에 ~할 수 있다,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예

제37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권고안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 ~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예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광업등록령」 제13조) ※권고안

 ~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는 제외한다 →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생 략)

1.·2. (생 략)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한다**)

→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마. 지시어의 내용을 직접 쓴다

정비기준

- 법 문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와 같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표현을 흔히 쓰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다만, 가리키는 내용을 직접 쓸 경우에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호나 목에서 명사로 끝난 말 다음에 단서를 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나 ‘예외로 한다’ 등으로 바꾼다.
- 특히 앞 문장에서 부정문을 쓴 경우 단서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쓰면 부정에 대한 부정이 되어 어색하다. 문맥에 맞게 풀어 쓰거나 ‘예외로 한다’, ‘제외한다’ 등으로 고쳐 쓴다.

💡 ‘같다’가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 경우

예

第536條(同時履行의 抗辯權) ①雙務契約의 當事者 一方은 相對方이 그 債務履行을 提供할 때까지 自己의 債務履行을 拒絶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먼저 履行하여야 할 境遇에 相對方의 履行이 困難할 顯著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前項 本文과 같다.

→

②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제2항) ※권고안

예

제5조(벌칙) ①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이'가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 경우


예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1항)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내용을 직접 서술한 경우

- 다음 예시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자 그대로는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없다'이다. 그러나 입안 의도는 소송기록의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 등본으로 열람/등사(복사)하게 할 수 있는데, 원본의 열람/등사(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본을 열람/등사(복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써 주어야 한다.

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 ③ (생략)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4항) ※권고안

예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로 바꾼 경우

- 호, 목 부분에서 서술어 없이 명사로 끝나는 말 다음의 단서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쓰는 것은 문법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 등으로 바꾼다.

예

○○○한 법인. 다만, ○○○한 비영리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 법인. 다만, ○○○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한 법인(○○○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 문장의 긍정 내용을 부정할 때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 문장이 부정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외한다' 등으로 고쳐 쓴다.

예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³⁹⁾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39) '경우는' 과 '경우에는'을 구별하여 쓴다.

(경우는) 예외로 한다(○)/경우에는(×)

- '예외로 한다' 앞에는 '경우에는'이 아니라 '경우는'을 써야 한다. '(~ 경우)를 예외로 (처리)한다'의 의미이므로 목적어 '경우를'에 보조사가 붙은 형태인 '경우는'이 자연스럽다.

- '경우에는' 다음에는 구체적인 서술어가 와야 한다. '~ 경우에는'은 부사절의 일종인 조건절이므로 다음에는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서술절이 와야 한다.

바. 문맥상 필요한 내용을 생략하지 않는다

정비기준

- 문장에서 필요한 문장성분이 빠져 있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문장의 의미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1) 명사가 생략된 경우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

- 다음 예시는 '피후견인을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라는 의미로 쓴 것이나, '피후견인을 감화하거나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의 의미로 오인될 수 있다. '감화기관'을 '감화'로 줄여 쓰기보다는 '기관'까지 쓰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예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중전의 「민법」 제945조)

💡 ‘조성사업’ → ‘교육 여건(환경) 조성사업’

- ‘조성’은 서술어 성격을 가진 명사로서 ‘분위기 조성’처럼 앞말에 목적어 성격의 대상을 필요로 하므로 법령 전체의 맥락을 보아 앞부분에 적절한 내용이나 설명을 보충한다.

예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

2. **교육 여건(또는 환경)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하였을 때

3. **교육 여건(또는 환경)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권고안

2) 부사어가 생략된 경우

💡 통보의 대상 명시하기

- 다음 예시는 서술어 ‘통보하는’에 호응하는 부사어 ‘누구에게’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찾아 적어 준다.

예

제42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법 제5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3) 형용사의 어미 등이 생략된 경우

 필요 또는 유익한 → 필요하거나 유익한

- ‘또는’이나 ‘및’은 동일한 자격의 단어나 어구를 연결해야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다음 예시에서 ‘필요 또는 유익한’을 ‘필요한 또는 유익한’으로 고치거나 ‘또는’을 빼고 ‘필요하거나 유익한’으로 고치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예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생략)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688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739조제2항) ※ 2019년 국회제출안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라는 표현은 ‘선의, 평온’에서 ‘하게’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선의하다’란 말은 없으므로 ‘선의’에 ‘하게’를 붙이면 어색하다. ‘선의’에는 조사 ‘로’를 붙이고 ‘평온 및 공연하게’는 ‘평온하고 공연하게’로 풀어 쓰면 문장이 보다 자연스러워진다.

예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公然)하게 선의로** 물건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제1항) ※ 2019년 국회제출안

4) 필요한 내용이 생략된 경우

💡 '장래를 훈계함' →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 생략된 훈계의 대상과 내용을 적어 줌으로써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예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생략)

1. ~ 5. (생략)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군인사법」 제57조제1항제6호)

- '징집·소집'이 '지원하여'와 연결되어 읽힐 우려가 있는 문장이므로 '입영하거나 귀가하는'과 연결되는 관계임이 드러나게 한다.

예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2. (생략)
3. **징집·소집** 또는 현역병으로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

* 개정 내용 반영

4.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으로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

(※권고안)

4.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으로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병역법」 제79조제1항제4호)

※ '귀가하는 사람'은 앞말(징집·소집에 ~ 지원하여)의 수식을 받지 않으므로 '입영하거나' 뒤에 쉼표(,)를 사용하여 수식이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4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가. 되도록 능동문으로 쓴다

1) 피동문의 주어를 찾아 쓴 경우

정비기준

- 우리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주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에 비해 피동문(被動文)을 잘 쓰지 않는다.
- 법 문장에서 주체가 사람인데도 피동문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피동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므로 주체를 드러내어 능동문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능동문은 의미나 행위 주체가 얼른 파악되는 반면, 피동문은 그렇지 않다. 또한 피동문은 '~에 의하여' 등의 부사구가 추가되어 문장이 복잡하므로 되도록 피동문은 능동문으로 고친다.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예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② (생략)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 학교 법인이 제출한

예

제2조(보조와 결정)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 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제2조제2항) ※권고안

2) 이중 피동문을 고쳐 쓴 경우

정비기준

- 피동 접미사(-이-, -히-, -리-, -기-), ‘-되다’, ‘-어지다’는 동사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를 결합한 형태, 그리고 ‘-되어지다’는 피동의 의미가 중첩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쓰여진 → 쓰인

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인**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조) ※권고안

💡 담겨진 → 담긴

예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은** 상태로 소각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권고안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구획되어진 → 구획된**

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방사선 구역”이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適當) 0.4mSv(4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여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

5. “방사선 구역”이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適當) 0.4mSv(4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여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된** 곳을 말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권고안

※ 이 조문은 ‘구획되어진’ 앞에 ‘구획물’이 나오므로, ‘방여칸막이 등으로 구획된’이나 ‘~ 등의 구획물로 구분된/나누어진/나뉜’ 등으로 써도 자연스럽다.

3) 피동문으로 쓰는 경우

정비기준

-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 주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피동문으로 쓴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무생물 주어인 ‘소멸시효’는 타동사인 서술어 ‘완성하다’의 주어가 될 수 없으므로 피동문으로 쓰는 게 자연스럽다.

예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 3. (생략)
4. 제9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개정 내용 반영

(「국민연금법」 제99조제4호)

💡 계획은 ~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획에는 ~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무생물 주어의 '기본계획은'인 현재 문장보다, 계획에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어로 하고 서술어를 피동 형태로 쓰는 게 자연스럽다.

예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2항) ※권고안

나. 일본어 투 표현을 쓰지 않는다⁴⁰⁾

- 일본어 투 표현이란 일본어의 문장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적어 우리 어법과는 다른 문장 표현을 말한다. 우리 법령에서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일본의 법령을 가져다가 문자적 의미에 충실하게 직역했기 때문이다.
- 일본어의 통사적 특징인 명사구 중심의 문장은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조사와 보조사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쳐 쓴다.
- 명사구 위주의 표현은 '명사+'의 문장구조를 낳는데, '명사+'로써 이루어지는 관형구조가 많아지면 짜임새 있는 문장이 되지 못한다. 압축적인 한자어 명사 표현은 풀어 씀으로서 우리말의 서술성이 살아나도록 한다.
- 일본어의 통사구조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관용어나 형식적인 목적어 등을 정비한다.
- 일본어 직역 투의 피동문은 우리 문법에 따라 다듬는다.

40) 일본어 투 관련 정비원칙이나 정비기준 등은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2003, 국립국어연구원)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1) 일본어 투 정비 대상 목록

일본어 투 표현	정비안
명사 나열형	조사나 보조사를 추가한다. 명사를 형용사나 동사로 바꾼다.
에	과, 로, 를, 보다, 에게, 에서, 에도
으로써	어(어서), 여(여서), 으로서
의	이/가, 을/를, 인. '의'를 생략할 수 있다
관하여	을/를, 은/는, ~에 관하여. 문맥에 따라 '관하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하여	을/를, 은/는, 에/에게, 로 하여금, ~에 대하여
요하는, 필요로 하는	~이 필요한
요하지 아니하다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필요하지 아니하다, ~하지 않아도 되다
~에 있어, 있어서	에서, 경우, 할 때, 하여, ~는 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하지 아니하는 한	경우 외에는, 경우가 아니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 한하여 · 1회에 한하여 · 2회에 한하여	~에서만, ~에 한정하여, ~오로만, ~에만 ·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 두 차례만, 두 번까지만, 두 차례에 한정하여, 두 번만
~에 한하다	~에 한정하다, ~로 한정하다, ~만 해당하다, ~만을 말하다, ~만(을) 할 수 있다

2) 일본어 투 표현의 정비

가) 명사 연속 어구의 정비

정비기준

- 문장에 명사가 나열되어 있거나 명사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문장이 딱딱해 보일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나열된 명사 사이에 조사를 적절히 넣어 명사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나열된 명사 중 일부를 형용사 또는 동사로 바꾸어 사용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 명사 연속 어구를 풀어 쓴 경우

- 문장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열되어 있으면 형식면에서 부자연스럽고 내용면에서도 불충분해지기 쉽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빠진 내용을 추가하고 조사나 서술어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쓴다.

예

부품의 호환성 제고를 위하여 →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 → 피난 장소에 도착했을 때의 조치

예

“사유명”란에는 다른 공사의 지연등 사유의 요약을 적는다.

→

“사유명”란에는 다른 공사의 지연 등 해당 지연 사유를 요약하여 적는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 명사가 연속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명사가 연속된 문장이더라도 문장이 어렵지 않거나 자연스러우면 장황하게 풀어 쓰지 않는다. 다음 예시는 ‘위하여’와 연결되는 부분, 즉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의 문장구조가 잘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유지

제24조(정원의 관리)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

나) 부적절한 조사의 정비

정비기준

- 법령문에서 조사 ‘에’가 자연스럽게 않게 사용된 예가 많은데, 일본어 격조사 ‘に’를 직역한 데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이는 일본어 격조사와 우리말 조사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데도 기계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 일본어 ‘に’에 대응되는 우리말 조사는 ‘에’뿐만 아니라 ‘를, 에서, 에게, 로, 과, 보다, 로서, 에도’ 등 다양하므로 ‘에’ 다음에 오는 서술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조사로 고쳐 쓴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1) 에 → 과, 로, 를, 보다, 에게, 에서, 에도

 과

- 보험에 관계있는 → 보험과 관계있는
- 내용에 관계있는 → 내용과 관계있는

예

제59조(급여원부의 작성) ① (생략)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과 관계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예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하였을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과 그 밖에 유언의 **내용과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88조) ※권고안

 로, 으로

- 시기에 소급하여 → 시기로 소급하여
-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 원상에 회복하여야 → 원래 상태/원상태로 돌려놓아야

예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제1항)

예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예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전세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민법」 제316조제1항) ※2019년 국회제출안



를

- 신의에 좇아 → 신의에 따라, 신의를 지켜

예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세법」 제6조)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보다**

-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결원 수에 부족하고 → 결원보다 적고, 결원 수보다 적고
- 다만, '미치다'의 경우 우리말에도 '~에 미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에'를 그대로 쓴다.

예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 ③ (생략)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군인연금법」 제16조제4항제1호)

예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 ⑥ (생략)

⑦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보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수가 **결원수에 부족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⑦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수가 **결원 수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12조제7항)

예: '에'를 쓸 수 있는 경우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항)

💡 예(41)

- 소유자에 속한 경우 → 소유자에게 속했을 때, (사람)의 소유인 경우

예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05조제1항) ※2019년 국회제출안

💡 에서

- 이 법에 규정한, 이 법이 규정한, 이 법으로 규정한 → 이 법에서 규정한

- ○○법에 정한, ○○법이 정한, ○○으로 정한 → ○○법에서 정한

~에서 규정한

제33조(대한체육회) ① ~ ⑦ (생략)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8항)

~에서 정한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질권자는 제353조에 따른 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민법」 제354조) ※2019년 국회제출안

41) '예'와 '예(41)'의 구별은 제82쪽 참조.

 예도

- 규정에 불구하고 → 규정에도 불구하고
- 보조사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낸다. ‘도’가 첨가되면 문장의 의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
- 우리말에서 ‘~에도 불구하고’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여기에서 ‘도’를 뺀 ‘에 불구하고’는 어색하다. 굳어진 표현은 그대로 써야 자연스럽다.

예

제4조(개방형 직위의 총원시기) ① ~ ③ (생략)

④ 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2) 으로써 → 여, 여서, 으로써

- 도구나 방법·수단을 나타내는 ‘으로써’는 한문 ‘이(以)’와 일본어에서 온 표현이다.

 나눔으로써 → 나누어서

- ‘으로써’가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보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연결하는 의미가 더 큰 경우에는 ‘어/(하)여’, ‘어서/(하)여서’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이 법에서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 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 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제11호)

💡 '오로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오로씨' 다음에 '하여'가 이미 있는 경우 '오로씨'를 '여'나 '여서'로 바꾸면 '여'가 반복되는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으므로 '오로씨'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예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1. ~ 5. (생략)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

- '오로씨'가 도구나 수단·방법 등의 의미로 쓰인 경우 '오로씨'를 '여'나 '여서'로 바꾸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되므로 '여'나 '여서'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예

제36조(청구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가사소송법」 제36조제1항)

(3) 의 → 이/가, 을/를, ~인, 생략

- 조사 '의'를 남용하는 것은 일본어 'の'의 영향이므로, 생략하거나 문맥에 맞게 바꾼다.

💡 주격 조사 자리에 '의'를 사용한 경우: 의 → 이/가

- 주어의 위치에 주격 조사가 아닌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해서 어색한 문장이 된 경우, '의'를 주격 조사인 '이, 가'로 고치면 문장이 쉬워진다.

예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 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 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개정 내용 반영

(「저작권법」 제39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예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생략)

②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0조제2항)

 **목적격 조사 자리에 ‘의’를 사용한 경우: 의 → 을/를**

- 다음 예시는 목적어의 위치에 목적격 조사가 아닌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여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이다. ‘의’를 목적격 조사 ‘을, 를’로 고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예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략)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제1호)

예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5조제1항)

-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생략)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의 분석·연구 분야 →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연구하는 분야

예

제4조(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의 분석·연구 분야**의 전문가

→

2. 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연구하는 분야**의 전문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 '의'를 문맥에 맞게 풀어 쓰는 경우

- '의'를 다른 조사나 어미, 서술어를 활용하여 풀어 쓰면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예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것**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두께가 4.5밀리미터 **이상의 것**

→

두께가 4.5밀리미터 **이상인 것**

수탁자 중 **법인의 경우에는**

→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

신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충격으로 인하여

→

외부의 강력한 충격으로 인하여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권고안)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자(者)’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경우 ‘사람’으로 바꾼다.

 ‘~의’를 반복해서 쓰거나 부적절하게 쓴 경우

- ‘의’는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핵심어 중심으로 쓰다 보면 오히려 ‘~의 ~의 ~의’식의 복잡한 문장이 되거나 부자연스럽고 딱딱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를 생략하거나 ‘에게’ 등 적절한 표현으로 고친다.
- 필요한 경우 조사나 동사를 활용하여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 건축물의 건축 √ 금지
임대주택의 건설에	→ 임대주택 √ 건설 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의 위반여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 여부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품위	→ 수사 √ 주재자로서 √ 지녀야 할 품위
변제 로서 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변제 로서 √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시행 과정 에서의 문제점의 분석이 필요하다.	→ 시행 과정 의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

예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저당권 대상물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적절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2조) ※2019년 국회제출안

예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 있는 자 등으로부터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적출·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예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5항)

※ 조 제목 '보험 등의 가입 의무'도 '보험 등에의 가입 의무'로 고쳐 써야 한다.

다) 불필요한 '관하여/대하여'의 정비

정비기준

- '~에 관하여/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한 어형(語形)이 그대로 정착되어 우리말처럼 쓰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법령문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 투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 하지만 '관하여/대하여'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나 간단한 조사를 써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에 관하여/대하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 '관하여/대하여'가 문장에서 사전상 의미대로 쓰일 때에는 살려 쓴다.

(1) ~에 관하여 → 이, 가, 을, 를, ~인, 생략

- ‘~에 관하여’는 문맥에 따라 ‘~에 관하여’를 삭제하거나 ‘~는’, ‘~를’, ‘~에’ 등으로 바꾸어 쓴다.

 ~를

예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144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5조) ※2019년 국회제출안

 ~에


- ‘운영’과 같이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서술성 명사) 다음에 ‘관하여 필요한’이 오면 ‘관하여’를 삭제해도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하여’를 삭제한다.

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에 관하여’를 그대로 쓰는 경우

- 다음 예시의 ‘장비’와 같이 서술성 명사가 아닌 단어와 ‘필요한 사항’을 바로 연결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관하여’를 살려 쓴다.

예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에 대하여 → ~를, ~에게, ~는, ~로 하여금, ~에 대하여

- ‘~에 대하여’는 문맥에 따라 ‘~에 대하여’를 삭제하거나 ‘~를’, ‘~에게’, ‘~로 하여금’ 등으로 바꾸어 쓴다.

💡 ~를

예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라 함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제17조·제18조제2항·제19조·제22조·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

💡 ~에게

예

제11조(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① (생략)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당해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당시의 직종 및 급별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당해 별정우체국의 **직원에게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 당시의 직종 및 직급별 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로 하여금

- ‘단체의 장에 대하여’를 ‘단체의 장에게’로 바꿀 수도 있다.
- 이때 ‘단체의 장에게’로 쓰면 ‘단체의 장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 하여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제17조(보고 및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낙농진흥법」 제17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에 대하여’를 살려 쓰는 경우42)

- 서술어의 대상이나 목적임을 나타낼 때는 ‘대하여’를 그대로 쓴다.
- 지원하는 대상이 ‘보건의료’이므로 ‘대하여’를 살려 쓴다.
- ‘~에게’와 ‘~에 대하여’가 한 문장에 같이 쓰이는 경우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명사에는 ‘~에 대하여’를 그대로 쓴다.

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

예
 제19조(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 ③ (생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라) 직역 투 서술어의 정비

정비기준

-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법령문에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은 일본의 법령문을 문자 그대로 직역한 데서 비롯되었다.
- 특히 서술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본어 투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의 법령 조문에 많이 등장하는 어구를 그대로 가져와 직역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직역 투 서술어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 쓴다.

42) ‘관하여’와 ‘대하여’

- ‘관하여’와 ‘대하여’는 사전상 서로 유사한 의미로 풀이되지만 ‘대하다’는 ‘대상이나 상대로 삼다’로, ‘관하다’는 ‘말하거나 생각하는 대상으로 하다’로 약간 차이가 있다.
- ‘국기에 관한 규정’과 ‘국기에 대한 규정’의 경우 ‘관하여’나 ‘대하여’ 둘 다 쓸 수 있지만 미세한 차이가 느껴진다. ‘국기에 대한’이라고 하면 국기의 모양, 크기 등 국기 그 자체와 관련된 내용(대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나, ‘국기에 관한’이라고 하면 국기 그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기 사용법, 보관법 등 그 밖의 내용(외연)까지 관심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대상 자체에 집중하는 내용에는 ‘대하여’가 자연스럽고, 대상의 주변까지 확장하는 내용에는 ‘관한’이 자연스럽다.

(1) 요하는, 필요로 하는 → ~이 필요한, ~할 필요가 있는

- ‘~을 요하다’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으로, ‘~이 필요한’, ‘~을 ~할 필요가 있는’ 등으로 자연스럽게 고쳐 쓴다.
- ‘다음절 한자어+する’ 형태의 용언은 일본어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면서 우리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다음절 한자어+-하다’와 같은 표현은 일상어에서 자주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위적으로 느껴지므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사용한다.

💡 ~를 요하다 → ~가(이) 필요하다

예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 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3호)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긴급을 요할 때** → 긴급한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

 **긴급을 요하거나** → 긴급한 경우이거나

예

제26조(보고 및 조사) ① ~ ② (생략)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제3항)

(2) **요하지 아니하다** →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필요하지 아니하다,
~하지 않아도 되다

- ‘요하지 아니하다’는 문맥에 맞게 순화하여 쓸 수 있다. 그러나 ‘필요가 없다’는 ‘요하지 아니하다’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서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요하지 아니하다’를 ‘필요가 없다’로는 순화하지 않는다.

예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권고안

예

제77조(신원보증) ① ~ ⑧ (생략)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사람이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9항) ※권고안

(3) ~에 있어, ~에 있어서 → ~에서, ~할 때, ~하는 경우, ~할 경우, ~하는 데에

- ‘에 있어(서)’나 ‘에 있어서의’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으로, 동사나 형용사로서의 ‘있다’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에서’나 ‘할 때’, ‘하는 경우’, ‘할 경우’, ‘하는 데에’ 등으로 고쳐 쓴다.

💡 에서

- 승진에 있어서 → 승진에서

예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우, 때

- 도급계약에 있어서 →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할 때, 도급계약을 맺을 때

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경우**

- 등에 있어서는 → 등의 경우에는


예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제1항)

 **시, 할 때**

- 업무에 있어서 → 업무 수행 시, 업무를 수행할 때

예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1항)

 **하는 경우, 하여, 할 때**

- 적용함에 있어서 → 적용하는 경우, 적용하여, 적용할 때

예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102조)

💡 하는 데, 하는 데에

- 제공함에 있어 → 제공하는 데, 제공하는 데에

예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 로, 로 인하여, 가 발생하여(문맥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 위기에 있어서 → 위기로, 위기로 인하여, 위기가 발생하여

예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4) 없는 한 → 없으면

- ‘없는 한’은 앞에 오는 말이 뒤의 상태에 대해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것이다. ‘없으면’이라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예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④ (생략)

⑤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

(5) ~하지 아니하는 한 →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니하였으면
→ ~한 경우 외에는, ~한 경우가 아니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하지 아니하는 한’을 문맥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 쓴다.

예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채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채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848조제1항) ※권고안

(6) ~에 한하여 → ~에서만, ~에 한정하여, ~으로만

- ‘~에 한하다’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이다.
- ‘~에 한하여’ 대신 ‘~에 한정하여’, ‘~에서만’, ‘~으로만’ 등의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 쓴다.

💡 ~에 한정하여

예

제12조(경매의 청구) ① (생략)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에서만

예

제11조(특별채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관계규정에서 공무원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를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일정계급이하의 **계급에 한정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특별채용)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 관계 규정에서 공무원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일정계급 이하의 **계급에서만**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권고안

💡 ~으로만

예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3조)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예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①·② (생략)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경찰공제회법」 제13조제3항)

(7) ~에 한한다 → ~에/로 한정한다, ~만 해당한다, ~만을 말한다,
~만(을) 할 수 있다

 ~만 해당한다, ~로 한정한다, ~만을 말한다


예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

 ~만 할 수 있다, ~만을 할 수 있다

예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에 같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에 같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의2제2항)

마) 직역 투 피동문의 정비

정비기준

- 법령문에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인 ‘~에 의하여’, ‘의한’과 같은 피동문이 많이 등장한다. 이는 일상적인 우리말 표현이 아니므로 표현과 어순을 조정하여 능동문의 형태로 고쳐 쓴다.
- ‘~에 의하여’가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으로’ 등으로 바꾼다.
- ‘~에 의하여’를 ‘~으로’로 바꾸어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 ~에 의하여 → ~가,

예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

2. 해당 상품이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것

(중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권고안

💡 ~에 의한 → ~이 실시하는, ~에 의하여 실시된, → ~이 실시한

-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과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의 주체이므로, 이들을 주어로 하여 능동문으로 쓰면 복잡하고 어색한 표현을 쉽고 단순하게 바꿀 수 있다.

예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실시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내용 반영

(「해양과학조사법」 제1조)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에 의하여 → ‘의하여’의 의미를 풀어 쓴 경우

- 다음 예시에서는 ‘의하여’가 의미하는 내용을 문맥에 맞게 풀이하여 적고 어순도 자연스럽게 조정한다.

예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방법에 의하여 → 방법으로

- ‘~에 의하여’가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으로’, ‘~로도’ 등으로 바꾼다.

예

제2조(기본이념) ① ~ ③ (생략)

④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④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예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출판물·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예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예

제4조(임의 중재) ① (생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시험에 의한다 → 시험으로 채용한다

- ‘의하다’는 문장의 종결 서술어로 잘 쓰이지 않는다. 다음 예시에서 ‘시험’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수단이므로 ‘~시험으로 채용한다’로 표현을 바꾼다.

예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에 의하여’를 유지하는 경우

- ‘~에 의하여’를 ‘~에 따라’, ‘~로’ 등으로 정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에 의하여’를 그대로 사용한다.
- ‘의하여’가 질병이 발생한 ‘원인’ 등을 나타낼 때에는 ‘의하여’를 사용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예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3호)

예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다. 어순을 자연스럽게 한다

정비기준

- 어순이 올바르지 않으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 수식하는 말(수식어)은 수식을 받는 말(피수식어) 앞에 두는 것이 기본 어순이다. 수식어는 뒤에 오는 말을 꾸미거나 한정하는 문장성분이기 때문이다. 수식 관계가 쉽게 드러나도록 어순을 바로잡는다.
- 복문에서는 각각의 주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되도록 주어와 서술어를 가까이 둔다.

1) 관형절(구) 어순 정비사례

- 관형어는 뒤에 오는 명사, 대명사 등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을 말한다.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놓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식 대상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수식어의 위치를 주의해서 쓴다.

관형절(구)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

- 다음 예시에서 관형절(구) ‘여단급 이상의’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이 ‘부대’를 수식하고 있다. 그런데 ‘여단급(旅團級) 이상의’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의 앞에 있으면 ‘여단급 이상의 전투’라는 말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두 관형절(구)의 위치를 조정한다.

예

제16조(보직) ① (생략)

② **旅團級이상의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第1項에 規定된 補職上의 資格을 具備한 戰鬪兵科出身將校로써 補한다.

→

②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군인사법」 제16조제2항)

2) 부사절(구) 어순 정비사례

- 부사절(구)은 동사·형용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따라서 수식을 받는 동사·형용사나 문장 앞에 두어야 한다.
-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여러 개 쓰려면 각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둘 이상의 부사절(구)에 대한 수식 관계를 각각 명확히 한 경우

- 다음 예시에서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하는 것은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의 조문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앞에 두었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또한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끝나'는 문장 전체(공단이 ~ 반환하는 경우에는)를 수식하므로 문장의 맨 앞에 두었다.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두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예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 사용자와 보수월액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보수월액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부사어를 서술어 가까이 옮긴 경우**

- 다음 예시에서 중심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서술어(권장할 수 있다)와 그 대상(가맹본부에) 사이에 긴 부사구(건전한 ~ 방지하기 위하여)가 있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권장하는 대상을 서술어 가까이에 둔다.

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③(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중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부사절의 주어와 서술어를 가까이 둔 경우

- 주어인 ‘국민이’는 서술어 ‘접근할’과 호응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보’를 설명하는 내용이 많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주어 ‘국민이’를 서술어 ‘접근할’ 가까이로 옮겨 수식 관계를 분명하게 한다.

예

제5조(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국민이 제9조에 따른 상시측정 및 조사결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5조제1항)

💡 수식 대상을 오해하지 않도록 부사어의 위치를 옮긴 경우

- ‘제3항의 범위 내에서’가 ‘공표된’을 수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의도는 제3항의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어순을 바꾸어 수식어를 피수식이 가까이 두어야 한다.

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 ④ (생략)

⑤ 제3항 각 호의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⑤ 제3항 각 호의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제3항의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권고안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5 한눈에 보이는 문장 쓰기

-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에 표·계산식·그림 등 시각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서술 중심의 체계로는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기 쉽지 않다. 수학적 내용이나 사물의 형상, 추상적인 개념·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표·계산식·그림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한다. 또 법령상 별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표·도표 등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에 직접 규정한다.

가. 표를 활용한다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구분한 경우에는 표를 활용할 수 있다.

예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나. 계산식을 활용한다

- 계산식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산식을 쓸 수 있다.

예

제6조(보험료의 납입) ① ~ ③ (생 략)

④ 조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에 전체 조합의 상호금 융일반자금대출시의 평균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조항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연체료 = 미납입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 × 전체 조합의 상호금융 일반자금대출 시의 평균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예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975/1000 + 65/10000 (재직 연수 - 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5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다. 그림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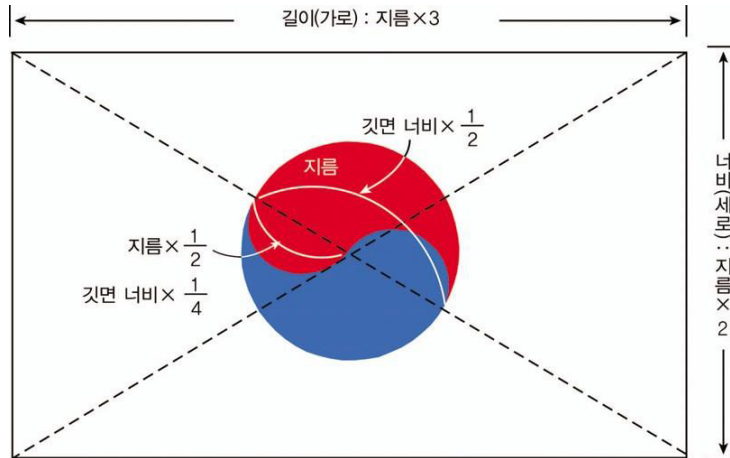
- 대상을 묘사하는 경우 그림으로 정확히 예시한다.

예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 (생략)

② 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문장의 짜임



1. 문장의 단위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를 말한다. 문장의 형식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때로 이런 성분이 생략될 수도 있다.

2. 문장의 구분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 단문(單文)과 복문(複文)으로 나뉜다.

가. 단문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을 말한다.

산이 높다
(주어)+(서술어)

나. 복문

두 개 이상의 절(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문장의 한 성분으로 사용되는 단위)로 된 문장을 말한다. 한 개의 절이 다른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거나, 둘 이상의 절이 서로 이어지거나 하여 여러 겹으로 된 문장이다.

복문은 다시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으로 나뉜다.

1) 안은문장: 하나의 절을 하나의 문장의 한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장. 이 때 포함되어 있는 절을 ‘안긴문장’이라 한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주어)]+[[(주어)]+(서술어)]+(서술어)]

▶ ‘이것이 일이다’라는 큰 문장 속에 ‘내가 해야 하다’라는 관형절이 안긴문장. ‘내가 해야 할’이 뒤에 나오는 ‘일’을 수식하는 관형어 구실을 한다.

길이 눈이 와서 미끄럽다.
[[(주어)]+[[(주어)]+(서술어)]+(서술어)]

▶ ‘길이 미끄럽다’라는 큰 문장 속에 ‘눈이 오다’라는 부사절이 안긴문장. ‘눈이 와서’가 뒤에 나오는 ‘미끄럽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구실을 한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2) 이어진문장: 둘 이상의 절이 연결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나뉜다.

(1) 대등접속문: 둘 혹은 그 이상의 절이 동등한 자격으로 접속된 문장. 연결어미 '-고', '-(으)며' 등으로 이어진다.

산이 높고 물이 맑다

[(주어)+(서술어)]고 [(주어)+(서술어)]

▶ 대등적 연결어미 '-고'로 앞뒤 절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2) 종속접속문: 두 개 이상의 절이 동등하지 않은 자격으로 접속된 문장. 연결어미 '-는데', '-(으)면' 등으로 이어진다.

산이 높으면 물이 맑다

[(주어)+(서술어)]면 [(주어)+(서술어)]

▶ 조건의 뜻이 담긴 종속적 연결어미 '-(으)면'으로 이어진 문장